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5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정보전명령의 집
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정보
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로, “발하여진”을 “내려진”으로,
“관계 서류를 검사”를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 ① 사법경찰관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사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법경찰관은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사에게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43조제1항 후단 중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이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을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을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u>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u>		<u>사법경찰관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사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u>		
<u>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u>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 내려진 -----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u>		
<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u>		<u>③ ----- 지방공소청 -----</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
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
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
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
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
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제42조(기소 전 추정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
조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
 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

⑤

지방공소청

제42조(기소 전 추정보전명령) ①
사법경찰관은 제41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
라도 검사에게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
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추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정보전명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 사
법경찰관의 명령은 「민사집행

<u>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u> ② (생략) ③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민사집행법</u>」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u>법령의 규정</u>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u>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u>이 관할한다.	<u>법」에 따른</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민사집행법</u>」이나 ----- ----- ----. ----- <u>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u> ----- ----- ----- ----- <u>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u> ----- ----- -----.
--	---